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1036호

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1호(2010.3.18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12.) 및 중구고시 제2018-61호(2018.5.30.)로 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중구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지정 정정 고시, 중구고시 제2023-6호(2023.1.18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중구고시 제2023-36호(2023.6.7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, 중구고시 제2025-3호(2025.1.8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131호(2018.12.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42호(2023.7.26.)로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36호(2024.05.3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
2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5. 10. 17. ~ 2025. 10. 31.(14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6층)

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3층)

다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

1) 사업명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 :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

- 3) 면 적 : 58,651.3㎡
- 4) 시 행 자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정수)
- 5) 사업계획 : 공동주택 12개동 1,159세대(임대 176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등
- 6) 변경내용(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)
- 가) 건축계획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세 대 수	1,213세대(임대183)	1,159세대(임대176)	-54세대
대 지 면 적	45,184.00㎡	45,184.00㎡	-
건 축 면 적	7,989.17㎡	9,497.08㎡	+1,507.91㎡
연 면 적	189,092.58㎡	211,423.93㎡	+22,331.35㎡
조 경 면 적	18,147.37㎡	15,209.94㎡	-2,937.43㎡
건 폐 율	17.68%	21.02%	+3.34%
용 적 율	244.17%	244.53%	+0.36%
최 고 높 이	83.67m	88m	+4.33m
주 차 장	1,611대	1,892대	+281대

- 나) 주택의 규모 등 건축시설
- 단위세대

공급구분	세대 수		주택규모별 세대 수					
			60㎡ 이하		60㎡ 초과~85㎡ 이하		85㎡ 초과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
합 계	1,213	1,159	696	608	449	458	68	93
분 양	1,030	983	513	432	449	458	68	93
임 대	183	176	183	176	-	-	-	-

- 부대복리시설 등

구 분	기 정	변 경	비고
복리시설 (주민공동시설)	7,359.51㎡	13,129.08㎡	+5,769.57㎡
부대시설	356.2㎡	1,042.12㎡	+685.92㎡
근린생활시설	7,624.93㎡	3,821.64㎡	-3,803.29㎡

라. 관계도서 : 생 략 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로 같음)

마. 기타사항

-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25) 또는 신당제8구역 주택정비사업조합(☎02-2231-9559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람서류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